

공정위, 5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5대 그룹 계열 33개사의 1조5천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에 따라 과징금 209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수)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기업집단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5대 기업집단 소속의 33개 계열회사가 21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총 1조4천9백2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중 30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기간 중에 5대 기업집단 소속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취지에 대해 5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자금·자산 등을 이용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우량한 기업의 재원을 부실 또는 한계기업에 분산·지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력부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개별기업 단위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내부거래 조사 결과 각 그룹의 주력기업인 33개 지원업체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 은행 특정증권신탁을 이용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 계열 증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한 행위나 선금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 등 1차 조사시에 적발된 유형과 대체로 유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회사채 발행시 위장 주간사 선정을 통해 계열 증권사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계열 증권사를 지원한 행위(대우)와 계열회사들로부터 받는 광고비, 부동산 임차료 등 계열사간의 자금결제를 계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처리토록 지정함으로써 계열 신용카드 회사를 지원한 행위(LG) 등을 지난 1차 조사시에 적발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부당내부거래 유형으로 지목·적발했다.

◆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 및 과징금 규모 ◆

(단위 : 개사, 억원)

기업집단	지원업체수	수혜업체수	지원성 거래규모	과징금 규모
현대	13	7	3,485	91
삼성	2	3	2,000	30
대우	11	3	415	45
LG	3	2	682	22
SK	4	6	8,345	21
합계	33	21	14,927	209

이번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조사 결과 총 21개사의 수혜회사의 81%인 17개사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며, 이중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기업이 4개사에 달해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이 재무구조가 빈약한 계열사를 집중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된 계열증권사의 『재무건전성기준』의 충족을 위해 계열회사들이 후순위사채를 고가로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대그룹 수혜업체별 재무상태 ◆

적 자 회사			자본잠식회사
1년 적자	2년 적자	3년 적자	
현대종합금속, 삼성증권, 삼성상용차, 한국전기초자, 대우자판, LG텔레콤, SK케미칼, 만도기계	현대증권, 한라시멘트, 대우증권, 중원, SK계약	현대리마트, 한라중공업	현대리마트, 중원, SK유통, SK계약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자금·자산 등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경쟁력이 약하거나 부실한 계열기업이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자력으로 경쟁하는 비계열 독립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지원주체인 우량기업의 경영에너지를 소진하여 핵심역량(core competition)을 약화시키고, 지원을 받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개별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당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외상매출금 수령시기의 차별적 취급행위나 LPG판매대금 결제기간의 차별을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동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각 기업 매출액의 2%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원금액(정상가격과의 차액×지원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및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을 근거로 각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 최근의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6대 이하 동부, 동양, 한솔, 한진, 한화 등 5개 기업집단 25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각 기업집단별 부당내부거래의 주요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주) 등 현대그룹 소속 계열 6개사는 '98년 1월 12일 및 '97년 12월 1일부터 '97년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계열사는 현대리마트(주) 및 친족독립경영회사인 만도기계(주) 등 한라그룹 4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200억원 및 835억원을 부도에 직면한 기업어음의 경우 시중금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26% 및 19~23%의 할인율로 각각 인수하였으며, 현대중공업(주) 등 11개 현대계열사는 후순위사채는 무보증·무담보로 만기 전에는 상환이 금지되며, 파산시 다른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변제가 가능하여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증권(주)가 급락한 영업용순자산비율을 높이고 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2월 5일과 3월 16일에 발행한 후순위채 1,700억원 및 500억원을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22.55% 내지 23.28%로 전액 인수하

는 방법으로 현대증권(주)를 지원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주)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합금속(주)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삼성그룹

삼성물산(주)는 '97년 12월 30일 장기신용은행에 4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한 후 특금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장기신용은행으로 하여금 동자금으로 삼성증권(주)가 같은 날 일반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인 28%~33%보다 낮은 17.26%의 수익률로 발행한 4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삼성증권(주)를 지원하였으며, '97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삼성중합화학(주)를 지원하였으며, '97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삼성중합화학(주)가 2회에 걸쳐 발행한 총 1,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삼성생명보험(주)는 '97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일은행에 예치한 특정금전신탁 200억원을 활용하여 3회에 걸쳐 자신의 계열사인 삼성상용차(주)가 발행한 총 600억원의 기업어음을 평균 기업어음의 할인율보다 최고 16.50%p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삼성상용차(주)를 지원하였다.

대우그룹

대우전자(주)는 '98년 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계열사인 한국전기초자(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총 200억원을 평균 기업어음의 할인율보다 저리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국전기초자(주)를 지원하였으며, 대우전자(주) 등 대우계열 8개사는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속 임직원에게

구입대금 16,002백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그 이자는 임직원 소속 각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대우자관을 지원하였다.

또한 회사채의 발행시 자신의 계열사가 주간사가 되는 것이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전자(주) 등 대우계열 9개사는 '97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대우증권(주)의 회사채 인수실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계열 증권사를 간사회사로 선정 후 편법적인 하인수 방식을 통해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대우증권(주)가 다시 인수·중개토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우증권(주)로 하여금 5,531백만원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였다.

LG그룹

LG정보통신(주)는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PCS 3사에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비계열사인 한솔PCS 등 2개사에게 매출액대비 평균 9.85%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데 비해 자신의 계열사인 LG텔레콤(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13.34%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LG텔레콤(주)를 지원하였으며, (주)LG애드 및 (주)LG유통은 그룹 회장실의 요구에 따라 '97년 4월 26일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 등을 LG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LG신용카드(주)를 지원하였다.

SK그룹

SK텔레콤(주) 등 SK계열 4개사는 '97년 4월부터 '98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열사인 SK유통(주)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당시의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방법을

.....
공정위업무활동

통하여 SK유통(주)의 화재복구작업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 수령하면서 공사대금의 구성항목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면제하여 정상공

사비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SK케미칼(주)를 지원하였다.

◆ **기업집단별 ·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

(단위 : 백만원)

집단명	회사별 과징금	계
현 대	현대자동차(800), 현대중공업(3,995), 현대할부금융(1,000) 현대종합상사(375), 현대자동차서비스(200), 현대상선(200), 현대산업개발(200), 현대전자산업(600), 현대석유화학(312), 현대정유(375), 현대증권(704), 현대정공(200), 인천제철(200)	9,161
삼 성	삼성물산(1,849), 삼성생명보험(1,179)	3,028
대 우	대우(1,251), 대우전자(1,171), 대우통신(338), 대우증권(23), 오리온전기(109), 대우정밀공업(162), 대우자동차(807), 경남기업(43), 다이너스클럽코리아(8), 대우중공업(412), 한국전기초차(136)	4,460
L G	LG정보통신(2,220)	2,220
S K	SK텔레콤(1,842), SK건설(204), SK케미칼(21)	2,067
합 계	30개사	20,936

공정위 인사

☞ **비상임위원 임명**

- 이임성 (李任成, 세계종합법무법인 대표)
- 임기 : 1998. 11. 23 ~ 2001. 11. 22(3년)

☞ **부이사관 승진**

- 김범조 (金範祚, 경쟁국 경쟁촉진과장)
- 이동규 (李東揆,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장)
- 정재찬 (鄭在燦, 경쟁국 공동행위과장)

☞ **국장 발령**

- 하도급국장 이한익 (李漢億, 前 공보관)

☞ **서기관 파견**

- 독일연방거래청 파견
- 김재중 (金載中, 前 독점국 기업결합과 서기관)
- 파견기간: 1998. 10. 15 ~ 2000. 10. 14